

2026 해외 관세동향

Overseas Customs Trends



CONTENTS



01. 미국

- 미국 2028 관세율표 개정안 공개
-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IEEPA 관세 환급 1단계 신청 개시
- 미 IEEPA 관세환급시스템(CAPE) 운영 현황(2026.5.22. 기준)



02. 중국

- 2026년 3월 중국 수출입 실적
- 2026년 4월 중국내 수입식품 통관 불허 현황



03. 일본

- 개인 수입 소액화물 세제 우대 관련 소비세법 개정 동향
- 관세법령 개정 동향
- 보세업무규칙 의무화 동향
- 칸나비놀 지정약물 지정 동향
- 나리타공항, 분말 형태의 금 밀수 급증 동향
- 일본세관, 신종 의심 약물 분석 및 지정약물 지정 현황
- 일본-인도 AEO 상호인정 실시 동향



04. 베트남

- 베트남 세관 조직구조 일부 개편 동향(시행일 '26.5.18.)
- 화학물질 및 정보통신 물품 수출입 관련 정책 동향



05. 태국

- 지식재산권 관련 단속 동향
- 대마 규제 강화(보건부령 개정, '26.4.26. 시행)

01. 미국

출처 :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미국 2028 관세율표 개정안 공개

■ 개정 개요 및 규모

- 2026.4.17.(금)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세계관세기구(WCO)의 HS2028 개정 권고안을 수용하여, 관세율표(HTSUS;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개정안을 공고
- 본 개정안은 세계관세기구(WCO)의 'HS 2028 개정 권고안'을 수용하여, 6개의 4단위 호(Heading)를 신설하고 428개의 6단위 소호(Subheading)를 도입

■ 분야별 신설 전용호 및 소호 정밀 분석

① (보건 및 의료) 인체용 백신 및 대응 장비 신설로 기존의 백신 분류 체계가 질병별로 대폭 세분화 되었으며, 긴급 의료 대응 품목도 세분류

- 인체용 백신(3007) : 기존 3002호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호로 신설

* 3007.11~19 : 홍역, 풍진, 수두, 대상포진, 볼거리 백신

* 3007.21~29 :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TP), 간염(A형/B형), 뇌수막염(Hib) 백신 및 5가/6가 혼합 백신

* 3007.31~39 : 결핵(BCG), 폐렴구균, 로타바이러스,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 특수 의료 차량 및 장비 : 구급차 및 이동식 진료소 신설

* 8703.11 : 구급차(Ambulances) 전용 소호 신설

* 8705.50 : 이동식 진료소(Mobile clinics) 전용 소호 신설

② (식품 및 건강) 그동안 '조제 식료품(2106)'에 혼재되어 통계 파악이 어려웠던 건강 보조 식품이 별도의 호(2107)로 분류

- 식이 보충제(Dietary Supplements) 전용 분류로 기존 2106.90에 해당하던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기반의 보조 식품들이 이 호로 이동하며, 성분 및 제형에 따른 세부 소호가 구성

③ (환경 및 원자재) 환경 보호와 신산업 지원을 위한 분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플라스틱 폐기물(3915) 및 대마(5302)가 신설

- 플라스틱 폐기물 (3915) : 바젤 협약 등 국제 환경 협약 이행을 위해 폐기물의 종류(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PVC 등)에 따라 소호가 세분화

- 산업용 대마 (Heading 5302) : 대마(True Hemp)의 산업적 가치를 반영하여 분류를 현대화함

* 5302.10 : 가공되지 않거나 retted 된 대마 // 5302.20 : 대마의 tow 및 waste

④ (산업 기계) 친환경 냉매 사용 및 에너지 효율에 따라 열펌프 및 에너지 효율 장비(8415, 8418, 8419)의 분류 기준이 신설

- 가역식 열펌프 (8415.31): 냉난방 겸용 열펌프에 대한 소호 신설

- 특수 냉매 기기 (8418.62): 수소불화탄소(HFCs) 등 특정 냉매를 사용하는 열펌프 장치 별도 분류

- 실험용 가열 기기 (8419.41, 8419.82): 로터리 증발기, 가열 맨틀 등 연구용 정밀 기기의 소호 신설

⑤ (기타 품목) 낚시 도구(9507) 및 영화용 필름(378415가06)

- 낚시 도구(9507) : 낚시대(9507.10), 낚시 바늘(9507.20), 낚시 릴(9507.30) 외에 뜰채 및 유사 용구 (9507.41~49) 소호가 신설

- 영화용 필름(3706): 35mm 이상의 필름에 대한 분류가 단순화 및 현대화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IEIPA* 관세 환급 1단계 신청 개시

*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

■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026.4.20(월)부터 IEIPA 관세 환급 1단계(미정산, 정산 후 80일 이내 항목 한정) 신청을 받는다고 4.10(금) 홈페이지에 공지

■ 홈페이지 주요 내용

● **(사전 필요 조치)** ①수입업자 또는 관세사가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계정 보유, ②환급수령인은 ACE 계정을 사용하여 은행 계좌 등록, ③수입업자 또는 관세사가 ACE 포털에서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신고서를 제출 해야 함

● **(신고 방식)** 신고는 환급을 요청하는 Entry 별로 하되 .CSV' 파일에 최대 9,999개 Entry를 넣어서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

- 다만, 신고서 제출 후 수정이 불가능하며, 누락된 Entry는 새롭게 신고서 제출 필요, 기존 신고서에 포함되었던 항목이 다시 포함될 경우 거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환급 대상)** 1단계에서는 미정산되었거나, 정산 후 80일 이내의 항목들로 제한. 이는 자발적 정산의 법적 기한인 90일까지 CBP가 환급 처리 후 정산할 수 있는 기한을 확보하기 위함

● **(환급금 수령 시기)** 일반적으로 CBP가 신고서 접수 후 60-90일 이내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

● **(향후 개발)** 조정(Reconciliation), 환급 (Drawback) 청구, 불복 신청, 덤핑/상계관세 대상 항목, 정산이 확정된 품목 등

※ 참고 : CBP 홈페이지 ➡ Trade ➡ Programs and Administration ➡ Entry Summary ➡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IEIPA) Duty Refunds



미 IEEPA 관세환급시스템(CAPE*) 운영 현황(2026.5.22. 기준)

* 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Entries

■ 2026.5.26.(화)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IEEPA 환급 시스템(CAPE)의 처리 현황 (2026.5.22.(금) 오후 3시(미 동부시간) 기준)을 국제무역 법원(CIT)에 제출

■ 주요 내용

- 157,402건의 환급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08,760건(69.1%)이 1차 파일 검증을 통과
- 108,760건의 신고서에는 총 15,752,806건의 수입신고(Entry)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8,515,477건, 약 850억USD 상당의 환급(원금 및 이자 포함)이 확정
 - 3,481,844건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주된 이유로는 재정산 기한(90일) 경과, IEEPA 관세 부과에 사용되는 제99류 HTS 번호 미포함 등임
- 환급은 CBP가 ACH(Automated Clearing House) 계좌 정보 확인 후 재무부에 전송하게 되는데, 206억 USD가 재무부로 지급 요청되었음. 다만, 4,185건의 환급은 계좌 정보가 없어서 재무부로 전송이 못 이뤄짐

02. 중국

출처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2026년 3월 중국 수출입 실적

■ 총괄

- 2026년 3월 수출입 금액은 5,909억불(전년동기대비 +12.7%), 수출은 3,210억불(전년동기대비 +2.5%), 수입은 2,699억불(전년동기대비 +27.8%), 무역수지는 511억불 흑자를 기록(전년동기 무역수지 1,026억불)
- 2026년 1~3월까지 누계기준 수출입금액은 1조 6,907억불(전년동기대비 +18%), 수출은 9,775억불(전년동기대비 +14.7%), 수입은 7,132억불(+22.7%), 무역수지는 2,643억불 흑자를 기록(전년동기 무역수지 2,730억불)

※ 2025년 기준수출입금액은 6조 3,548억불(전년동기대비 +3.2%), 수출은 3조 7,719억불(전년동기대비 +5.5%), 수입은 2조 5,829억불(전년동기대비 0.0%)로 무역수지는 11,890억불 흑자를 기록

■ 품목

- **(수출)** 수출 증가폭이 가장 큰 품목은 집적회로 725억불(전년동기대비 +77.5%), 자동차(새시포함) 408억불(전년동기대비 +58.5%), 선박 149억불(전년동기대비 +48.7%), 하이테크제품 2,694억불(전년동기대비 +28.6%), 자동차료처리설비 및 그 부분품 604억불(전년동기대비 +26.7%), 비료 18억불(전년동기대비 +22.6%)
 - 수출 감소폭이 가장 큰 품목은 장난감 68억불(전년동기대비 -14.8%), 철강제품 173억불(전년동기대비 -10.8%), 히토류 1억불(전년동기대비 -9.0%), 신발 장화 94억불(전년동기대비 -8.0%), 램프·조명장치 및 부분품 83억불(전년동기대비 -5.3%), 휴대폰 266억불(전년동기대비 -4.7%)
- **(수입)** 수입 증가폭이 가장 큰 품목은 히토류 7억불(전년동기대비 +167.5%), 비료 19억불(전년동기대비 +59.6%), 자동 데이터 처리 장치 및 그 부분품 357억불(전년동기대비 +49.5%), 동광사와 그 정광 259억불(전년동기대비 +45.6%), 집적회로 1,280억불(전년동기대비 +45.0%), 식용 식물성 기름 24억불(전년동기대비 +30.4%)
 - 수입 감소폭이 가장 큰 품목은 적재중량 2톤초과 항공기 13억불(전년동기대비 -70.5%), 천연가스 116억불(전년동기대비 -15.4%), 기초플라스틱 90억불(전년동기대비 -12.3%), 강재 23억불(전년동기대비 -10.5%), 자동차(새시 포함) 44억불(전년동기대비 -10.2%), 신선·건조과일 및 견과류 43억불(전년동기대비 -9.9%)

■ 對한국 수출입 실적

- 2026년 3월 한국과의 수출입금액은 389억불(전년동기대비 +40.4%), 수출은 154억불(전년동기대비 +19.4%), 수입은 235억불(전년동기대비 +58.8%)로 무역수지는 -80억불 적자 기록(전년동기 무역수지 -19억불)
- 2026년 1~3월한국과의 수출입금액은 1,003억불(전년동기대비 +35.4%), 수출은 415억불(전년동기대비 +24.5%), 수입은 588억불(전년동기대비 +44.3%)로 무역수지는 -173억불 적자 기록(전년동기 무역수지 -55억불)

※ 2025년 기준

한국과의 수출입 금액은 3,312억불(전년동기대비 +1.2%), 수출은 1,442억불(전년동기대비 -1.1%), 수입은 1,870억불(전년동기대비 +3.1%)로 무역수지는 -428억불 적자 기록

2026년 4월 중국내 수입식품 통관 불허 현황

- 2026.4월 중 중국내 통관이 불허된 수입 식품류는 총 463건이며, 국가별로는 브라질 98건, 일본 39건, 에콰도르 32건, 미국 28건, 말레이시아 24건, 베트남 19건, 아르헨티나 15건 등이고 한국은 6건
 - 사유별로는 라벨 불합격 134건, 증명서 미비 또는 미제출 126건, 서류와 화물 불일치 89건, 전염병 검출 62건, 식품 첨가물 기준 위반 18건 등

한국산 수입식품 통관불허 상세내역(6건)

연번	회사명	상품명	중량(Kg)	통관불허사유	반입지해관
1	S0000	바닐라맛 쿠키	17.4	총균수 기준치 초과	칭다오
2	D0000	옥수수칩	30	라벨 부적합	칭다오
3	A0000	바삭한 과자 등	12	증명서 미제출	칭다오
4	H0000	두유 음료	790.4	유통기한 기준 불충족	상하이
5	H0000	유제품 음료	790.4	유통기한 기준 불충족	상하이
6	J0000	냉장 황민어	1,815	라벨 불합격	상하이

※ 중국 해관당국에서 통관불허되는 수입식품 건수는 1월 629건, 2월 452건, 3월 445건, 4월 463건이며, 우리나라 기업의 월별 통관불허건수는 10건 내외*

* (1월) 14/629건 → (2월) 10/452건 → (3월) 11/445건 → (4월) 6/463건

03. 일본

출처 :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개인 수입 소액화물 세제 우대 관련 소비세법 개정 동향

■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대상 개편

- 이번 개정에서는 해외에서 일본으로 판매되는 소액 물품에 대한 과세 방식을 정비. 해외에 소재한 자산 중 1만엔 이하로서 일본 국내로 발송되는 “특정 소액자산의 양도”는 국내 거래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에 포함(제2조, 제4조 관련)
- 다만, 등록된 특정 소액자산 판매사업자가 거래를 수행하고, 수입신고서 등에 등록번호와 해당 물품이 특정 소액자산임이 기재된 경우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 시 소비세를 면제(제8조의 2 관련)
- 또한, 간이과세제도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며(제37조 관련), 수입 단계에서 이미 소비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비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제40조 관련)

■ 플랫폼 과세 제도 도입(제15조의 3 관련)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거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과세 제도를 신설. 일정 규모(과세기간 기준 거래금액 50억엔 초과)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는 "제2종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되며, 해외사업자 또는 특정 소액자산 판매자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고 대금을 플랫폼을 통해 수취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판매한 것으로 간주
 - 다만, 제2종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제15조의 3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2028년 4월 1일 이후에 종료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플랫폼 사업자는 관련 거래 내역을 명세서로 작성하여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일정 요건 하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도 인정

■ 특정 소액자산 판매사업자 등록제도 신설

- 특정 소액자산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등록 제도를 도입. 해당 사업자는 세무서에 신청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경우 수입 시 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대신 등록사업자는 거래 시 등록번호와 해당 자산이 특정 소액자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서류에 기재하고 수입자 또는 통관업자에게 통지해야 함(제2조, 제9조, 제57조의 7, 제57조의 8 관련)
- 또한 특정 소액자산이 아님에도 해당되는 것처럼 오인될 표시를 하거나 등록번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시 처벌 대상에 포함(제57조의 9, 제65조 관련)

관세법령 개정 동향

1. 관세정율법

■ 개인 사용 화물의 과세가격 결정 특례 폐지(2028년 4월 1일 시행)

- 수입 거래가 소매 단계인 화물 중 수입자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해당 화물의 수입이 '통상적인 도매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던 특례를 폐지(제4조의 6 관련)

■ 덤핑방지관세 우회 방지 제도의 신설

-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대상 화물의 품목이나 공급국을 변경하는 '우회 행위'가 발생하는 수입 화물에 대하여, 동등한 할증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정비(제7조, 제8조, 제8조의 2 관련)

■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휘발유, 등유 및 경유의 기본세율화

-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휘발유, 등유 및 경유에 대하여 개정 전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로 규정하고 기존의 잠정세율을 폐지함(별표 관련)

2. 관세법

■ 보세장치장 등의 업무 절차 및 체제에 관한 규칙 제정 의무화 및 업무개선명령 등 관련 규정 정비(2026년 6월 1일 시행)

- 보세장치장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법령 준수에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제에 관한 규칙 제정을 의무화 하고, 해당 허가자 등에 대한 업무개선명령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34조의 2, 제43조, 제45조의 2, 제48조 등 관련)

■ 범칙 조사 절차의 디지털화(2027년 10월 1일 시행)

- 형사소송법 개정예 발맞추어, 관세법상 범칙 조사 절차에 대해 '전자적 기록 제공 명령'의 창설 등 절차 디지털화에 관한 규정을 정비(제121조, 제128조, 제132조, 제136조, 제141조, 제148조 등 관련)

3. 관세잠정조치법

■ 잠정세율 등의 적용 기한 연장

- 2026년 3월 31일에 적용 기한이 만료되는 잠정세율 및 특별긴급관세 제도에 대하여 적용 기한을 1년 연장하며, 가탕조제품의 잠정세율을 인하(제2조, 제7조의 3, 제7조의 4, 별표 등 관련)

■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휘발유, 등유 및 경유의 기본세율화

-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휘발유, 등유 및 경유에 대하여 개정 전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로 규정하고 기존의 잠정세율을 폐지(별표 관련)

■ 항공기 부분품 등 면세 제도 및 가공 재수입 감세 재도의 적용 기한 연장

- 2026년 3월 31일에 적용 기한이 만료되는 항공기 부분품 등 면세 제도 및 가공 재수입 감세 제도에 대하여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함(제4조, 제8조 관련)

4. 시행일

-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

보세업무규칙 의무화 동향

1. 관세법 주요 개정 사항(2026년 6월 1일 시행)

■ 보세업자에 대한 업무개선명령 신설

- 보세업자가 관세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관세 행정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세관은 해당 업자에게 업무 수행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제41조의 3, 제45조의 2 외)

■ 보세업무규칙 제정의 법적 의무화

- 기존의 관세법 기본통달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련했던 사내관리규정을 대신하여, 관세법 등 법령 준수를 위한 업무절차 및 체제를 규정한 '보세업무규칙' 제정을 법적으로 의무화(제41조의 2, 제43조 제11호, 제62조의 8 제2항 제7호 외)

■ 화물 반출 시 확인 의무 신설

- 보세업자가 외국 화물 또는 수입 허가 화물을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해 필요한 허가, 승인 또는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신설(제34조의 2)

■ 행정처분 규정 정비

- 업무개선명령을 위반할 경우 보세구역 내 화물반입 정지 또는 보세구역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제41조의 4, 제48조, 제62조의 14 외)

2. 보세업무규칙 관련 경과조치 및 제출 기한

- 법 개정에 따라 모든 보세업자는 신설된 '보세업무규칙'을 제정하여 관할 세관에 제출해야 함. 다만, 기존 업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과 조치를 적용

- **(기존 보세업자)**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이미 보세구역 허가를 받았거나, 화물을 관리 중인 자는 2026년 9월 30일까지 규칙을 제출하여야 함

- **(신규 신청자)** 2026년 6월 1일 이전 허가를 신청하여 그 이후에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규칙을 제출하여야 함. 2026년 6월 1일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허가 신청서의 첨부 서류로 규칙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보세업무규칙의 내용 및 제출 방법

- 보세업무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관세법 시행규칙 및 관세법 기본통달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기존 사내관리규정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 **(기존 사내관리규정 활용)** 이미 세관에 제출한 사내관리규정이 새로운 보세업무규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규칙을 만들지 않고 해당 규정을 그대로 보세업무규칙으로 사용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존 규정을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 **(제출방식)** 서면 제출 외에도 전자통관시스템인 NACCS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정 보세 구역과 일반 보세구역의 신청 코드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

칸나비놀 지정약품 지정 동향

■ 주요내용 및 배경

- 대마 성분의 일종인 칸나비놀(Cannabinol, CBN)은 2025년 10월 28일 약사 심의회 지정약품 부회에서 지정약품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된 물질에 해당.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칸나비놀을 지정약품로 지정하는 성령을 공포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 (지정약품) 후생노동성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할 개연성이 높고, 인체에 사용될 경우 보건 위생 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약물에 대해 지정약품로 지정

- 시행 후에는 해당 물질 및 해당 물질을 포함한 제품에 대한 의료 등의 용도 이외 목적으로의 제조, 수입, 판매, 소지, 사용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영리 목적인 경우 5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

■ 예외사항 및 관련 절차

- 대체 가능한 치료법이 없는 난치성 질환 또는 장애 진단을 받고 칸나비놀 제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환자의 경우 후생노동성에 '의료 등의 용도에 관한 보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후생노동성이 이를 바탕으로 발급하는 '지정약품 용도 확인서'를 통해 칸나비놀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음
- 판매 사업자는 영업소마다 '판매 서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 마약단속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 확인을 받은 후에 판매가 가능. 해외에서 칸나비놀을 수입하는 경우는 먼저 '판매 서약서'를 제출한 뒤 수입할 때 마다 '지정약품 수입 감시 요령'에 따라 사전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매 반기마다 '재고 보고서'를 마약단속부에 제출해야 함
- 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비자나 사업자는 2026년 6월 1일 이후 칸나비놀의 소지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바, 그 전까지 반드시 제품을 폐기해야 함

나리타공항, 분말 형태의 금 밀수 급증 동향

- **(적발 현황)**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적발된 금 밀수 사건은 총 33건(약 46kg)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적발 건수의 약 90%에 해당하는 30건(약 45kg)이 금괴의 형태가 아닌 분말 형태로 확인. 이는 시가로 약 12억엔 상당이며,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량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밀수 수법)** 도쿄 세관은 적발된 금 밀수 수법이 악질화·교묘화되고 있다고 지적. 밀수업자들은 금 가루를 비닐봉지나 피임기구에 소분 포장하여 향문이나 질 등 신체 내부에 삽입하여 반입하였으며, 한 명이 신체 내부에 숨겨 들어오다 적발된 금 가루의 양이 최대 2.7kg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음. 분말 형태는 금속 탐지기의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고, 체내에 숨길 경우 육안이나 일반적인 휴대품 검사로 발견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임
- **(주요 경로)** 이번에 나리타 공항에서 적발된 금 밀수 사건 30건은 모두 중국 및 홍콩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이용하였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 8명 및 여성 22명이 동원.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범해 보이는 중장년층 여성들을 포섭하여 조직적으로 운반책 역할을 맡긴 것으로 드러남
- **(대응 동향)** 분말 형태의 금 밀수 급증에 대응하여 나리타 세관은 최신형 금속 탐지기 및 바디스캐너를 적극 활용한 정밀 검사를 강화하고, 특히 홍콩 등 특정 위험 노선 입국자에 대한 검사 비율을 대폭 높여 나가고 있음
- **(향후계획)** 도쿄 세관은 가루 형태 금 밀수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제 밀수 조직이 개입된 ‘조직적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할 방침. 도쿄 세관은 금 가루의 체내 은닉이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적발 시 관세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됨을 강조하며,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음

일본세관, 신종 의심 약물 분석 및 지정약물 지정 현황

■ 배경

일본 세관은 중추신경계의 흥분·억제·환각 작용을 가질 개연성이 높고, 인체에 사용되었을 경우 보건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후생노동성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약물*에 대해 불법 약물로서 단속을 강화

*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항

- 다만, 현재 지정약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정약물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진 약물 등은 지정 약물과 동등 이상의 정신 독성을 가질 우려가 있는바, 세관에서는 이러한 유사 약물에 대해서도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성분 분석 등을 시행

■ 대응

세관 검사 등에서 성분이 불분명한 약물 등이 발견되면, 관세중앙분석소나 각 세관의 분석 부서에서 분석 실시. 분석 결과 지정 약물은 아니지만,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진 것으로 판명된 약물 등에 대해서는 후생 노동성에 관련 정보 제공

■ 성과

세관과 후생노동성 간 정확한 정보 공유 및 긴밀한 협력 체계 등으로 지난 2016년 사무연도부터 현재 까지 관세중앙분석소는 총 111건의 관련 정보를 후생노동성에 제공하였고, 그 중 54건(49%)이 지정 약물로 신속하게 지정되는 등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

일본-인도 AEO 상호인정 실시 동향

■ 현황

'24.12.24.부터 일본 재무성 관세국과 인도 간접세·관세중앙위원회 간 서명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 약정과 관련, 일본과 인도 양국에서 해당 약정 이행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26.5.20.부터 공식 시행

■ 혜택

AEO 상호인정에 따라 양국 세관당국은 수출입 화물의 심사·검사 시 해당 화물이 상대국의 AEO 사업자에 의한 수출입 화물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자국의 위험 평가에 반영. 이를 통해 양국 공급망의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AEO 사업자와 관련된 통관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됨

■ 이용방법

세관당국은 양국 기업 및 통관업자가 상호인정 혜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코드 입력 방법 및 대응 지침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

- **(인도)** 일본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경우 일본의 AEO 수출자는 OBIN(Overseas 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 코드를 인도의 수입자에게 알려주고 인도의 수입자는 인도에서 수입 절차를 진행할 때 OBIN 코드를 입력함으로써 상호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인도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 일본의 AEO 수입자의 상호인정용 코드(17자리)를 인도의 수출자에게 알려주고, 인도의 수출자가 해당 코드를 수출 절차 시 입력하여 상호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일본)** 인도의 AEO 수출입자와 거래를 하는 일본의 수출입자는 AEO 수출입자가 보유한 17자리 코드를 상대방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17자리 코드를 일본 NACCS용 12자리 코드로 변환하는 방법에 따라 12자리로 변환하여야 함
 - 일본에서 수출입 신고를 할 때, 수출입자 또는 통관업자가 변환한 12자리 코드를 NACCS의 송하인 코드란 또는 수하인 코드란에 입력하면 상호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음

04. 베트남

출처 :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베트남 세관 조직구조 일부 개편 동향(시행일 '26.5.18.)

- 현재 지역2세관지국(호치민 시 관할) 소속인 떤선녓 국제공항세관과 특송세관을 지역15세관지국 소속으로 이관
- 재무부의 규정과 권한위임을 보장하도록 지역15세관지국의 운영방안 마련
 - '25.6.30. 재무부 결정 시 지역15 및 지역16 세관지국은 잠정적으로 폐지하고 별도로 결정이 될 때까지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이번 결정으로 '25.6.11. 재무부 결정에 부합하게 조직구조가 개편
 - 지역15세관지국은 호치민시에 위치하며 떤선녓 공항세관, 특송세관 및 롱탄신공항세관 등 남부지역 공항세관을 총괄하는 세관으로 기능 조정

화학물질 및 정보통신 물품 수출입 관련 정책 동향

- 베트남 정부는 화학물질 수출입 허가, 정보통신 수입물품의 품질검사 등록관련 업무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결의안 시행('26.4.29.)
- ① 결의안 제19/2026/NQ-CP호(산업부) : '26.5.29.부터 적용
 - 특별관리대상 화학물질 수출입 허가증 접수·발급 관할 변경 : (현) 상공부 화학국 → (개) 생산·사업장 소재 성급 인민위원회
 - 적법한 서류 일체 접수날로부터 허가 처리기간 단축
 - *서류미비 통보는 3근무일(현행유지), 허가 처리기간은 7 → 5근무일로 단축
- ② 결의안 제20/2026/NQ-CP호(과기부) : 26.7.1일부터 적용
 - 정보통신·통신 분야 수입물품 품질검사 등록·확인 관할 변경 : (현) 과기부 베트남통신청 → (개) 기업본사 소재 성급 인민위원회

05. 태국

출처 :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지식재산권 관련 단속 동향

■ 단속배경

3월 초 미국 무역 대표부(USTR)는 '2025 악명높은 시장 보고서'를 발표. 동 보고서는 19개국 37개의 온라인 시장과 32개의 오프라인 시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태국은 유일하게 오프라인 시장 중 MBK 센터가 포함

■ 1차 단속

2026년 3월 12일 상무부 산하 지식재산청(DIP)과 특별수사국(DSI)은 MBK 센터 내에서 상표권 침해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17개의 상점과 창고를 점검

- 점검결과 대량의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상품이 발견되었으며, 대부분의 품목은 유명브랜드를 모방한 가방, 신발, 의류 및 패션 제품임
- 당국은 위반자를 체포하고, 10만개 이상의 품목을 압수했으며, 피해액은 약 3만 바트로 추정됨

■ 2차 단속

지식재산청(DIP)이 경제범죄수사과(ECD)와 함께(경제범죄수사과장 타삿품 자루프랏 경찰 소장 지휘) 2026년 3월 18일 MBK 센터에서 위조상품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 실시

- MBK에서 지식재산국(DIP)과 특별수사국(DSI)이 공동으로 수행한 1차 단속에 이어 당국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형태를 변경했을 수 있는 침해 상품의 판매 재개를 억제하고, 재발 여부를 모니터링 및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이번 점검에서 수천 점의 위조 상품이 적발되었으며, 경제적 피해 규모는 최소 7천만 바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대부분의 물품은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가방, 신발, 의류, 향수 및 패션 제품이 포함
- 당국은 해당 물품을 압수하였으며, 위반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 중
- 단속 이후 MBK 센터 경영진은 정부 당국에 대한 전면적인 협조 의사를 표명. 쇼핑센터는 위조상품 판매가 적발된 입점업체 49곳과의 임대계약을 이미 해지하였으며, 신규 입점업체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강화할 예정



대마 규제 강화(보건부령 개정, '26.4.26. 시행)

- **(대마 꽃 통제약초 지정)**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 0.2% 이상의 대마 추출물 및 꽃 (Inflorescence) 부분을 '제5군 마약(통제약초)'으로 재지정
- **(사용목적 제한)** 대마 추출물의 생산·소지·유통은 △의료·보건, △공무(단속), △연구·교육, △정부 허가 산업용으로만 한정하며, 향락 및 오락 목적의 흡연·섭취는 전면 금지
- **(생산 수출입 자격 제한)** 의료 산업용 대마 추출물의 생산 수출입 면허 신청 자격을 태국 법인으로 한정,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차단
- **(철저한 이력 관리)** 면허 소지자는 매월 운영 보고서를 보건부에 제출해야 하며, 생산 시 성분 분석 및 규격 미달 제품의 폐기 의무